



2016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세계 순위

이상우 수석연구원

- 국가별 연금제도(MMGPI)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종합점수 46점 D등급을 받아 평가대상 27개국 중에서 22위를 차지함. 국가별 연금제도 점수(MMGPI)는 공·사 연금제도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을 평가하여 산출한 지수임. 우리나라의 순위가 낮은 이유는 퇴직연금 지배구조 체계, 기업파산 시 수급권 보호장치, 가입자에 대한 공시 등 투명성, 가입자 민원해소 장치 등 주로 사적연금과 관련된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임.

- 호주금융연구센터(ACFS)¹⁾와 컨설팅회사인 머서(MERCER)는 세계 27개국의 공·사 연금제도를 평가한 제8회 국가별 연금제도 점수를 2016년 10월 24일에 발표함.

- MMGPI(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는 국가별 연금시스템의 적정성(Adequac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적연금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완전성(Integrity)을 총 40개 항목을 통해 종합평가하여 산출한 지수임.

〈표 1〉 MMGPI의 평가체계와 평가항목

평가 구분	가중치	내용	주요 평가항목
① 급부 적정성	40%	연금액이 은퇴자의 노후생활에 적정한 정도	연금수준, 소득대체율과 저축률, 세금혜택, 연금지급 개시연령, 퇴직금통산성, 분할연금, 주택소유 여부, 연금자산의 투자대상 등
② 제도 지속가능성	35%	현재 지급하는 연금의 장기 유지 가능성	사적연금 가입비율, 연금자산 규모, 기대수명과 연금수급연령 간 차이 등, 노인부양비율 전망, 합산출생률, 소득대비 기여율,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정부 부채, 고령근로자 근로와 연금소득 병행유무 등
③ 사전연금 완전성	25%	사적연금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요건 구비 정도	감독기구 독립성, 감독체계, 지배구조 체계, 연금재정 평가, DB·DC형 제도 납입의무 및 개인계정, 수급권 보장장치, 가입자 공시 등 투명성 확보, 가입자 민원 해소장치, 비용효율성, 연금자산 규모의 크기

1)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의 투자를 받아 2005년에 설립한 비영리 연구단체임.

● 종합평가한 점수는 <표 2>와 같이 A~E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연금제도 발달정도를 분류함.

<표 2> MMGPI 등급기준과 제도 발달정도 분류

종합점수	35 미만	35~50 미만	50~60 미만	60~65 미만	65~75 미만	75~80 미만	80 이상
등급	E	D	C	C+	B	B+	A
제도 발달 정도	연금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거나 초기 개발 단계	이들 국가의 연금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음. 적절한 개선이 없는 연금의 유효성 및 장기 지속 불가능	연금시스템이 일부 장점이 존재하나, 심각한 위험 및 단점도 존재. 적절한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연금시스템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위협 요인		많은 장점을 가진 건전한 연금시스템 보유. 단, 최고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점 필요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급부를 제공하며 건전성이 높은 최고수준의 연금시스템 보유

■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표 3>과 같이 종합 점수 총 46.0점, D등급을 받아 평가대상 27개국 중에서 22위를 차지하여 연금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MMGPI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D등급 국가의 경우 “연금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고 적절한 제도 개선이 없는 연금의 유효성과 장기적 지속가능한 제도가 불가능”한 국가로 분류함.

<표 3> 국가별 MMGPI와 순위 추이

순위		국가명	등급	종합점수	항목별 점수(괄호 안은 가중치)		
2016	2015				적정성(40%)	지속가능성(35%)	완전성(25%)
1	1	덴마크	A	80.5	75.8	85.3	81.4
2	2	네덜란드	A	80.1	78.2	77.0	87.7
3	3	호주	B+	77.9	76.0	74.1	86.1
4	6	핀란드	B	72.9	70.6	62.2	91.5
5	4	스웨덴	B	71.4	67.6	69.5	80.3
6	5	스위스	B	68.6	60.5	67.4	83.5
7	10	싱가포르	B	67.0	61.4	66.8	76.1
8	7	캐나다	B	66.4	68.0	58.8	74.5
9	8	칠레	B	66.4	56.5	68.4	79.6
10	11	아일랜드	C+	62.0	76.2	34.8	77.3
11	9	영국	C+	60.1	55.5	48.8	83.2
12	12	독일	C	59.0	70.4	35.8	73.1

〈표 3〉 국가별 MMGPI와 순위 추이(표 계속)

순위		국가명	등급	종합점수	항목별 점수(괄호 안은 가중치)		
2016	2015				적정성(40%)	지속가능성(35%)	완전성(25%)
13	14	미국	C	56.4	53.5	57.1	59.9
14	13	프랑스	C	56.4	75.2	35.2	55.8
15	—	말레이시아	C	55.1	67.9	29.2	70.7
16	17	브라질	C	55.1	67.9	29.2	70.7
17	15	폴란드	C	54.4	57.9	41.2	67.3
18	18	오스트리아	C	51.7	67.4	16.0	76.7
19	20	이탈리아	D	49.5	65.5	13.5	74.4
20	16	남아프리카	D	48.6	34.0	44.7	77.3
21	21	인도네시아	D	48.3	41.0	43.0	67.3
22	24	한국	D	46.0	46.5	43.9	48.1
27	—	아르헨티나	D	37.7	42.3	30.1	40.9
MMGPI 평균				58.1	59.0	48.5	70.1

■ 우리나라 순위가 낮은 이유는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체계, 기업 파산 시 수급권 보호장치, 가입자 공시 및 투명성 제공, 가입자 민원해소 체계 등 주로 사적연금체계 항목에서 0점(10점 만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 저소득자 연금 수준(1.4점),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및 세제혜택(2점), 기대수명과 수급연령 간 차이·노인부양비율 전망·과거 출산율(2.2점), 사적연금 가입률(3.4점), 연금자산 규모(3.4점), 소득대비 기여율(3.8점) 항목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기록함.
- 반면, 중산층에 유리한 연금세제,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이연, 고령자의 근로·연금 소득 병행 가능, DB형 제도 최소 납입의무 및 DC형 제도 개인별 계정 유무 항목 등에서 10점 만점을 받음.

■ 향후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개선 및 수급권 확보, 퇴직연금 감독 및 감시기능 강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공시 및 투명성 강화, 가입자 민원해소 체계가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kiri](#)